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-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산업의 융·복합 활성화 -

2017. 11.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
Ⅰ.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

◈ 보험환경 변화 : 고령화 등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,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헬스케어 산업 성장

□ 최근 全세계적으로 **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**에 따른 **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**가 **사회적인 현안**으로 부상

* OECD국가의 노인층(65세 이상) 인구 비율 : (1990년)12.0% → (2016년)17.0%
전세계 당뇨병 환자수(WHO) : (1980년) 1.1억명 → (2014년) 4.2억명

○ 우리나라도 빠른 고령화, 만성질환 증가 등*으로 **'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'**이 **OECD 국가**에 비해 **빠르게 증가****

* 노인층(全국민의 13.1%)의 의료비 지출 비중 : ('15)36.8% → ('20)45.6%(건보공단)
만성질환자(全국민의 28.5%)의 의료비 지출 비중 : ('15)36.2%(건보공단)

** 최근 15년간 GDP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 : (OECD평균)1.8%p, (한국)3.2%p [**약 2배**]
최근 3년간 GDP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 : (OECD평균)0.1%p, (한국)0.8%p [**약 8배**]

○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'기대수명이 아닌 **건강수명 연장**(health span)', '치료보다 **사전 예방**(cure → care)' 등으로 **변화**

□ 이러한 **사회적 수요 증가**와 **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**이 결합되면서, **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**

* 전세계 헬스케어 산업은 매년 4%이상 高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
(딜로이트, 2017 Global Healthcare outlook)

○ 특히, 의료기관뿐 아니라, IT시스템, S/W, 센서·장비 제조사 등 **다양한 新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가 빠르게 확장**

* (제조업) : 바이오 센서, 웨어러블 기기, (S/W) 앱(App) 개발, 보안프로그램
(서비스) : 건강 상담, 운동프로그램 코칭, (데이터)빅데이터 분석, DB 관리

○ **IT기술, 빅데이터**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**스마트 헬스케어 분야**는 **연평균 41%의 높은 성장세**를 보일 전망

*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성장 전망(십억달러, 보건산업진흥원) : ('14)6.9 → ('20)53.1

◈ 보험산업 혁신 : 헬스케어 + 보험이 결합된 혁신형 보험상품 확대 이를 위한 법령의 해석 · 적용기준 마련 필요

□ 이러한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**'보험'과 '헬스케어'가 결합된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'**이 활성화

※ (참고) 해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사례

☑ [일본, AXA Japan] 보험사가 **모바일 App과 연동**하여 계약자의 **건강정보를 수집·관리**하고 **생활습관 개선을 지원**하여,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**보험료 할인/할증하는 프로그램** 운영

☑ [남아공, 디스커버리社 - 英푸르덴셜, AIA, 中평안보험] 계약자가 디스커버리社의 **건강관리 프로그램**(Vitality)**에 가입**하고 건강등급을 부여받은 후, **계약자의 노력으로 건강 등급이 개선**되면, ①보험료 할인, ②보험금 증액, ③캐쉬백 등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

☑ [중국, 중안보험]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·판매함과 동시에, 혈당 수치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 제공

○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'보험계약자', '보험회사', '연관 산업의 발전' 등의 측면에서 **유망한 인슈어테크**(Insurtech) 분야

❶ 보험계약자는 스스로의 **건강관리 노력을 통해** '건강수명'을 연장하고 **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도 절감**

❷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의 **질병발생 확률,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** 낮아지면서 **손해율이 하락**

*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: 당뇨예방 노력을 30년간 지속시 사회적 편익은 비용의 약 2.5배

❸ **헬스케어 산업**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**일자리 창출***, **창업 활성화**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

*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('14년, 한은) : 19.2명/10억원(全산업 평균 12.9명)
헬스케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('14년, 한은) : 16.7명/10억원(全산업 평균 8.7명)

◈ '보험'과 **'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'** 등이 결합된 **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개발**을 촉진해 나갈 필요

◈ 이를 위해, 전통적 보험상품에 기초한 현행 보험업 법령의 **구체적 적용기준**을 마련하여 **신상품 개발의 제약요인 해소**

Ⅱ. 가인드라인 주요내용

1 추진경과 및 기본원칙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**공동 T/F를 구성**('17.4월)하고, **『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가이드라인』**을 마련

○ 보험업계는 **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**의 경우, 특별이익 제공 금지(법 제98조), 기초서류 작성기준(법 제128조의3) 등 **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** 신상품 개발에 애로

○ 이에 따라, 그간 제기된 **애로사항을 해소**하고 **다양한 혁신상품 개발**을 가로막는 **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** 가이드라인 마련

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5대 기본 원칙

1 **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,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**

2 **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(보험료만 인상)하는 상품은 제한**

3 **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,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(유병자 등)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**

4 **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·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, 보험모집(판매)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**

5 **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**

2 주요내용

1 **(목적) 건강관리 노력·성과**에 따라 **소비자의 위험이 감소**하면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 등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(환급)하는 **혁신상품의 개발·판매기준**을 제시

2 **(적용대상) 질병·사망보험**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

- ○ 자동차보험, 재해사망보험 등 **계약자**(피보험자)**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**은 **제외**
- ○ **저축성보험**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**혼합된 상품**의 경우에는 **질병·사망 보장에 한정**하여 적용
- ○ 기존 상품에도 '**특약**'의 형태로 **보험료 할인혜택** 등을 제공 가능

3 **(제공되는 편익)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,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, 캐쉬백, 포인트, 건강관련 서비스** 등 광범위하게 허용

- ○ **보험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·성과**에 대해 다양한 **현금 및 非현금성 혜택**을 선택 가능

* ①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
②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
③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또는 보험금의 증액
④ 건강 관련 서비스의 제공(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한함)
⑤ 보험회사 업무제휴를 체결한 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 지급 등

- ○ 다만, 소비자의 **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**하는 기본취지에 맞게 **보장내용,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**은 제한

* 예시 : 주유쿠폰,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은 제외

※ (참고) **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**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이유

- 보험사는 기기의 파손·분실, 계약의 중도 해지시 기기 회수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에 소극적
-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 시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

⇨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에 반영

4 **(건강관리 노력 측정) 건강관리 노력·성과**를 측정·관리하는 지표는 **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**

* 예: (해외통계)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시 의료비 21.2% 절감
(해외연구) 일주일에 9마일(1일 30분)이상 걸으면 사망률 22%감소, 혈관질환 18% 감소
(국내연구) 당화혈색소 수치를 7%이하로 관리시 미세혈관합병증 발병률 37% 하락
(국내연구) 당화혈색소 수치 1%p 하락시 당뇨관련 사망률 31%, 심근경색증 14% 하락

- ○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란 **국내외 보험통계, 학술·연구자료** 등에서 계약자의 **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**

5 **(기초서류 반영)** 소비자의 **건강관리 노력·성과**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**편익이 제공되는 기준**은 **기초서류에 명시**

- ○ **(보험료)** 건강관리 노력 이전에 부과되는 **초기 보험료**, 미래 **할인되는 보험료, 보험금 증액** 등은 **통계적으로 산출**
  - 다만, **혁신상품 도입 초기**에 **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**하여, 통계수집 차원에서 **최초 5년간*** **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**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 등 **가능**

* 現보험업감독규정도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 5년간 적정성 검증 등 면제

- ○ **(건강관리 노력 측정)** 소비자의 **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·관리**하는 방법을 명시
  - 특히,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·관리하는 기준을 **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***, **그 변경절차·기준 등을 미리 설정**

* 예 : 걸음수 측정 앱(app) 개발 회사의 도산, 웨어러블 기기 파손 등의 경우 그에 준하여 대체할 수 있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수단 및 대체방법 등을 기초서류에 명시

- ○ **(편익 제공절차 및 방법)**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**내용, 제공절차 및 방법**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  - 제공되는 **편익의 내용 등을 부득이 변경**해야 하는 경우*, **그 변경절차·기준 등을 미리 설정**

* 예 : 연간 일평균 8천보를 걸으면, 헬스클럽 무료이용권을 제공했으나, 헬스클럽 파산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대체하는 보험편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

6 **(내부통제)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** 및 **과도한 출혈경쟁** 등으로 **보험사 부실**이 발생하지 않도록 **내부통제절차** 마련

○ 보험회사는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'에 대한 **손익분석 기준**을 마련하여 **현행 법령상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필요**

○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**손익분석을 실시**하고, 그 결과를 보관

○ **선임계리사 확인이 있는 경우**에는 **손익분석 기준 변경 가능**

7 **(소비자 보호)** 건강증진형 **보험상품 개발·판매**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**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기준**을 구체적으로 명시

○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하는 기준, 보험료 할인 등 **혜택의 내용·방법**은 **약관의 중요사항**이므로 **보험계약 체결 前에 반드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**할 필요

○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**계약의 유지·관리 과정**에서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나, **그 정보는 목적外 사용을 엄격히 제한**

○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**제공하는 편익 유형**에 '**보험료 할인**'을 포함토록 하여, **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만 제공**하여 **소비자 혼란을 초래**하는 부작용을 방지

* 계약자의 부담 증가 없이, 비현금성 보험편익과 현금성 보험편익을 혼합하여 건강관리노력의 수행 정도 및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

○ 보험사는 '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', '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' 등을 **홈페이지에 공시**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**매년 1회 이상** 주기적으로 안내

8 **(보험상품 신고)**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'도 **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가 가능**

○ 통계수집 등을 위해 **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등 혜택**을 제공하는 경우, **이미 신고한 상품과 동일유형 상품**을 출시하는 경우 등은 **별도 사전신고 불필요**

○ 다만, **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**에 따라 **위험 구분단위 자체를 새롭게 설정**하는 新상품 개발시에는 현행 법령(令 별표6)상 신고 필요

3 보험상품 예시

1 **(웨어러블 기기) 각종 스마트기기**(웨어러블 기기)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**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**을 제공

< 사 례 >

▸ 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(하루 만보) 달성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%를 할인 또는 일시금 지급

* 연간 보험료 100만원시 5만원을 일시에 지급 가능

▸ 스마튼 폰에 걸음 측정 전용 앱(App)을 설치하고 연간 300만보 이상 달성시 모바일상품권(4만원)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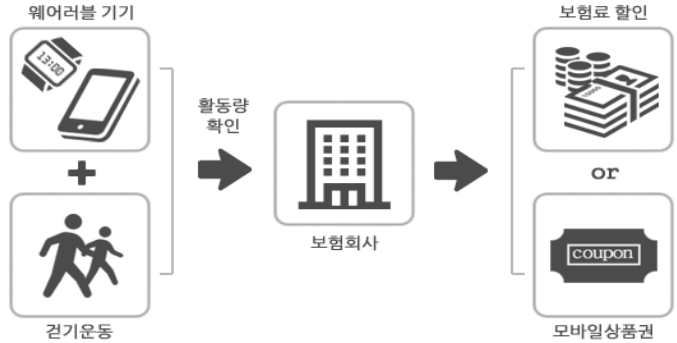

2 **(건강관리 프로그램) 제휴 헬스케어 회사**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**건강지표 달성**시마다 **건강관리 서비스, 보험료 할인** 등을 제공

< 사 례 >

▸ 건강관리 활동별* 등급(4단계)에 따라 0%~15% 보험료 할인 및 현금·상품권 4천원~1만원, 등급 상승시 현금·상품권 1만원~4만원 지급 등

* 건강검진 수치, 금연성공 여부, 예방접종 여부, 숙면측정, 식습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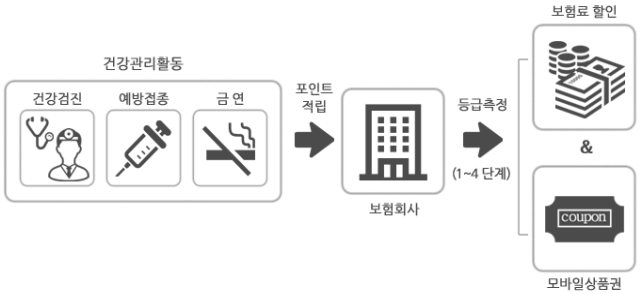

3 **(유병자 상품)**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**관련 질환·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**하면 보험료 할인(환급) 등을 **정기적으로 제공**

< 사 례 >

▸ 당뇨질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관련 지수(당화혈색소*)를 일정수준(예:7.0% 또는 7.5%)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또는 일정기간의 보험료 할인 분을 일시금(예: 매년 10만원)으로 지급

* 당화혈색소 : 혈액 속 포도당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Hb(혈색소)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당화헤모글로빈을 말하며, 이를 검사하여 평균 혈당 농도를 측정

※ 건강관리에 따른 위험감소 효과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상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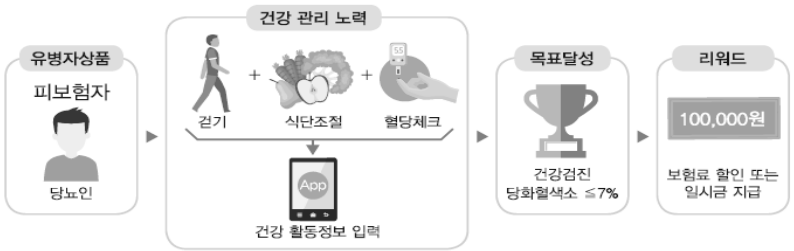

4 부적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예시

1 특별이익 금지 등 위반 관련

❶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에 대한 아무런 **측정·수집이 없음에도 불구, 3만원을 초과**하는 웨어러블기기를 **미리 제공**하는 경우

* 다만, 사업비 범위내에서 소비자가 기기의 구매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가능

❷ 건강관리노력이 **기초서류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자**에 대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경우

❸ **사실상 달성할 수 없거나,** 또는 **별다른 노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** 보험편익의 제공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

2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 법규 위반

❶ 보험사가 보험편익의 실제 제공기준 등에 비해 **과장·왜곡된 내용**(보험편익의 장점만 부각)**만을 부각시켜 광고**하는 경우

❷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**동일·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**에게 **충분한 설명 없이** 신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경우[⇨ 승환(乘換)계약에 해당]

3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 위반

❶ 통계 및 학술연구에서는 **3년 이상 건강관리노력을 지속해야 피보험자의 질병위험 등이 감소**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, **1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**하는 경우

❷ 보험회사가 **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** 제공 중인 **보험료 할인,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부당하게 중단**하는 경우

Ⅲ. 향후 계획

1 **법령의 해석·적용**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**예측가능성**을 높이고, **불확실성을 해소**하기 위해 **『가이드라인』으로 제정·운영**

○ 금융규제민원포털(금융감독원 홈페이지) 등에 **『가이드라인』을 공고**(20일)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

○ 모든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**행정지도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시행**

2 예상치 못한 **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**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(비조치의견서) 등을 통해 **지속 보완**

○ **'가이드라인'**의 시행 이후, **업계의 보험상품 개발·판매 추이**를 보아가며 업계 요구가 있는 경우 **법령에 반영 검토**

3 **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**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된 **他 상품**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 검토

○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의 발달 등으로 화재보험, 손해보험 등 **다양한 상품*** **개발이 가시화**될 전망

* 예 : 누수감지센서, 도난방지 센서 등 IoT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위험, 도난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등 제공

○ **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**하고 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하여, 상품개발 수요가 있는 경우 **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확대**